

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2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5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,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
- 기정 2020 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「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지침」에 의거하여 기 수립된 평창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평창군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주요지표,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관리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평창군의 2035년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을 결정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
 - 목표연도 : 2035년
 - 미 래 상 :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평화의 도시 평창
 - 계획인구 : 62,000인

- 공간구조 : 4지역중심 4지구중심
- 생활권 : 3생활권(남부생활권, 중부생활권, 북부생활권)
- 토지이용계획 : 평창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군기본계획 수립대상 면적조정 및 제반여건변화를 반영
-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 수립

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(안) 개요

1. 계획의 목적

- 국가 정책 및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대내·외 여건변화,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상 정립
- 기 수립된 군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평창군이 처한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한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
- 목표연도인 2035년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및 읍면지역의 균형 개발 등을 위한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계획적 도시성장기반 마련
- 군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을 마련하여 일관된 도시관리체계 확립

2. 계획의 개요

- 목표연도 : 2035년
- 계획인구 : 62,000인
- 위 치 : 평창군 행정구역 전역
- 면 적 : 1,463.828km²

3. 여건변화

- 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증대
 - KTX강릉선 구간이 개통되어 수도권~강릉간 소요시간이 2시간 내외로 단축되어 수도권이 만나질 생활권으로 포함됨
 - KTX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에 기반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예상되며, KTX 개통에 따른 도시의 접근성 제고로 주변지역과의

산업·경제 네트워크 형성

-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지역위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
 -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알펜시아리조트 등 동계스포츠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동계스포츠의 관광·휴양 메카도시로의 발돋움

4. 추진경위 및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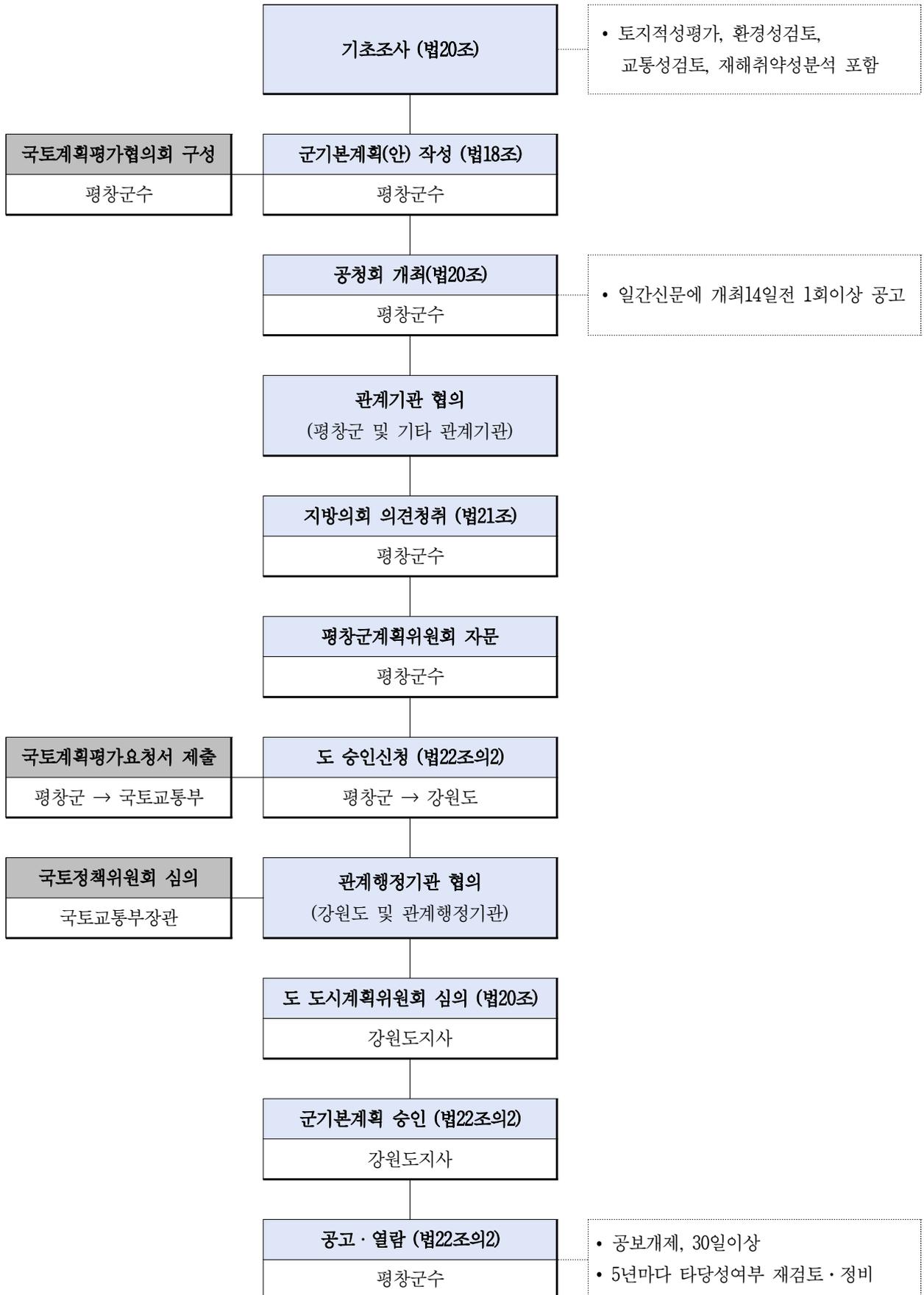
1) 추진경위

- 2018.08.29. : 2035년 평창 군기본계획 용역착수
- 2019.02.11. ~ 02.24. : 군민의식조사
- 2019.06.27. ~ 09.26. : 주민참여단 및 길잡이지원단 운영
- 2019.07. ~ 2020.01. : 국토연구원 사전협의(국토계획평가)
- 2020.01. :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
- 2020.03.20. : 강원도 사전협의
- 2020.04.13. ~ 29. : 관련부서 협의
- 2020.04.28. :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개최

2) 향후 추진일정

- 2020. 05. : 공청회 개최
- 2020. 06. : 평창군계획위원회 자문
- 2020. 06. : 강원도 승인신청 및 관계부처 협의
- 2020. 08. :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·의결
- 2020. 09. : 강원도지사 승인
- 2020. 10. : 공고 및 열람

5. 군기본계획 결정 절차



6. 주요변경사항

1) 도시미래상 및 계획목표

- 2035년 평창군의 도시미래상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,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좋은 환경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성장하는 평창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

미래상 **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평화의 도시 평창**

4대 계획목표

- 01 자연이 중요한 생태도시**
- 02 살고 싶은 고원휴양도시**
- 03 사계절 레포츠 관광도시**
- 04 평화 · 평등 · 희망의 도시**

■ 4대 계획목표 및 16대 추진전략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연이 중요한 생태도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산림자원 연계형 산림수도 육성 • 수변공간 활용성 제고 및 랜드마크 조성 •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조성 및 생태경관보호 •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가 구축된 생태도시 구현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살고 싶은 고원휴양도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 조성 •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정주환경 조성 • 농촌의 삶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•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안심도시 조성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계절 레포츠 관광도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창형 관광매력 거점도시 추진 • 지역 특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• 지역간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 • KTX 역세권과 연계된 관광루트 개발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화 · 평등 · 희망의 도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창 평화 특례시 추진 및 평창 평화포럼 개최 • 평화 허브 조성을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 • 사각지대 없는 모두를 위한 복지 구현 • 특화된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교육 기반 조성

2) 목표연도 계획인구

○ 계획인구 : 62,000인

- 자연적 증가 인구 : 39,469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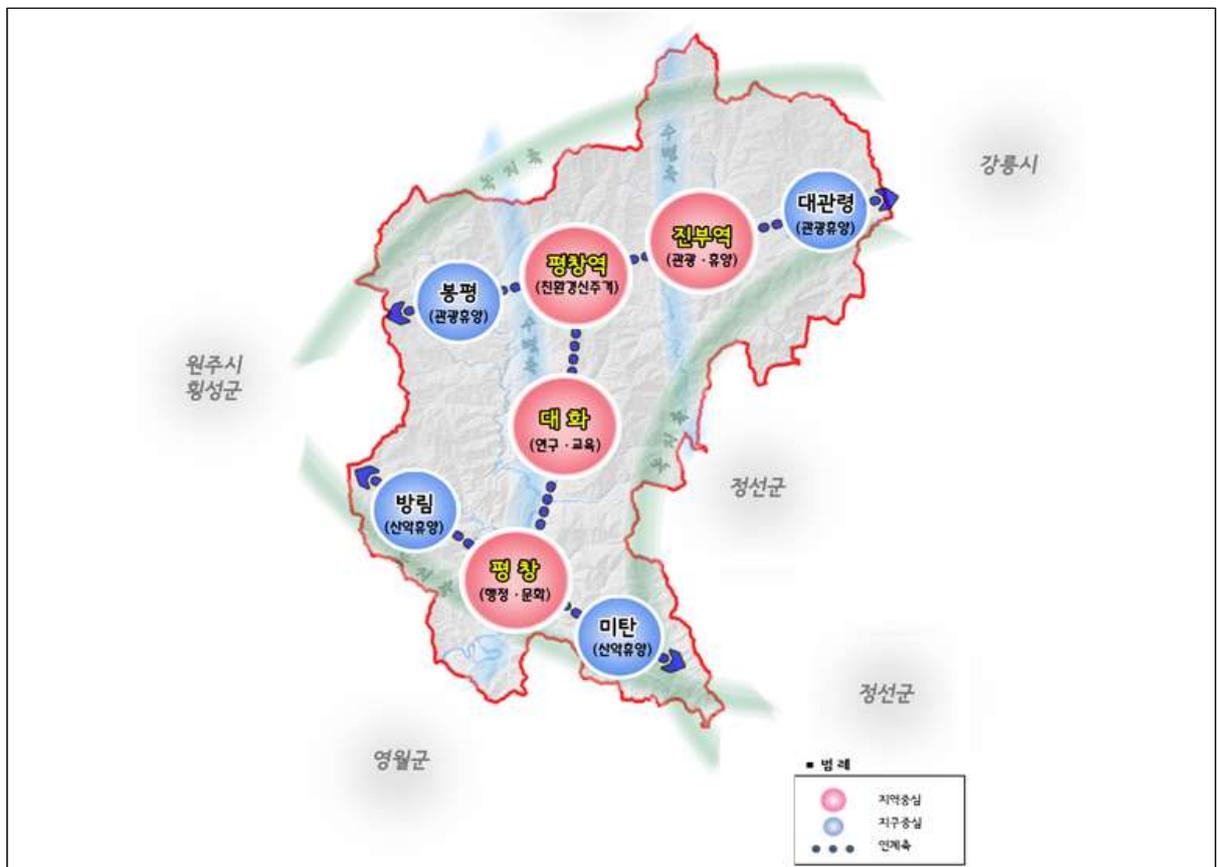
- 사회적 증가 인구 : 22,400인

구분	세부사업명	위치	목표연도 계획인구	단계별 인구배분계획				
				2020년	2025년	2030년	2035년	
합 계			61,869 ≒ 62,000	42,051 ≒ 42,000	42,374 ≒ 42,000	51,616 ≒ 52,000	61,869 ≒ 62,000	
자연적	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		39,469	42,006	41,214	40,386	39,469	
사회적	소 계		22,400	45	1,160	11,230	22,400	
	동계 올림픽 특구 사업	알펜시아· 용평리조트지구	대관령면 용산리	1,100	-	300	700	1,100
		관광기반시설 지구	대관령면 차항리	50	-	-	25	50
		자연순응형 휴양·체감지구	대관령면 횡계리	800	-	400	600	800
		대관령 관광거점지구	대관령면 횡계리	50	-	-	25	50
	문화 관광 사업	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	평창읍 중리	100	-	25	50	100
		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	평창읍 중리	100	-	25	50	100
		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	평창읍 중리	200	25	70	150	200
		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	평창읍 중리	100	20	40	80	100
		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	평창읍 중부리	800	-	-	400	800
		광천선굴테마 파크 조성사업	대화면 대화리	100	-	-	50	100
		국가고사 출제센터건립	용평면 재산리	600	-	-	-	600
	도시 개발 사업	평창역세권 개발사업	용평면 재산리	12,000	-	-	6,000	12,000
		진부역세권 개발사업	진부면 송정리	5,200	-	-	2,500	5,200
		송정지구 주택건설사업	진부면 송정리	1,200	-	300	600	1,200

3) 도시공간구조

- 지역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도시기능의 효율적 배분 및 역할 수행을 위하여 “4 지역중심, 4 지구중심”으로 설정
- 기존 도시공간구조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지역중심지 중 평창, 대화지역은 유지하고 KTX 평창역, 진부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신규 지정하여 역세권 중심, 광역교통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집적
- 지구중심지역은 지역중심 지역과의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방림, 미탄, 봉평, 대관령으로 설정하여 당초 기능 유지 및 강화

구분	해당지역	주요기능
4 지역중심	평창읍	• 행정, 문화중심지
	대화면	• 생명·바이오연구, 교육 중심지
	평창역 일원	• 친환경 신주거 중심지
	진부역 일원	• 관광·휴양 중심지
4 지구중심	미탄면	• 산악(계곡형)휴양기능 강화
	방림면	• 산악(계곡형)휴양기능 및 웰리힐리파크연계개발 유도
	봉평면	• 휘닉스평창을 중심으로 동계 관광휴양기능 강화
	대관령면	• 관광휴양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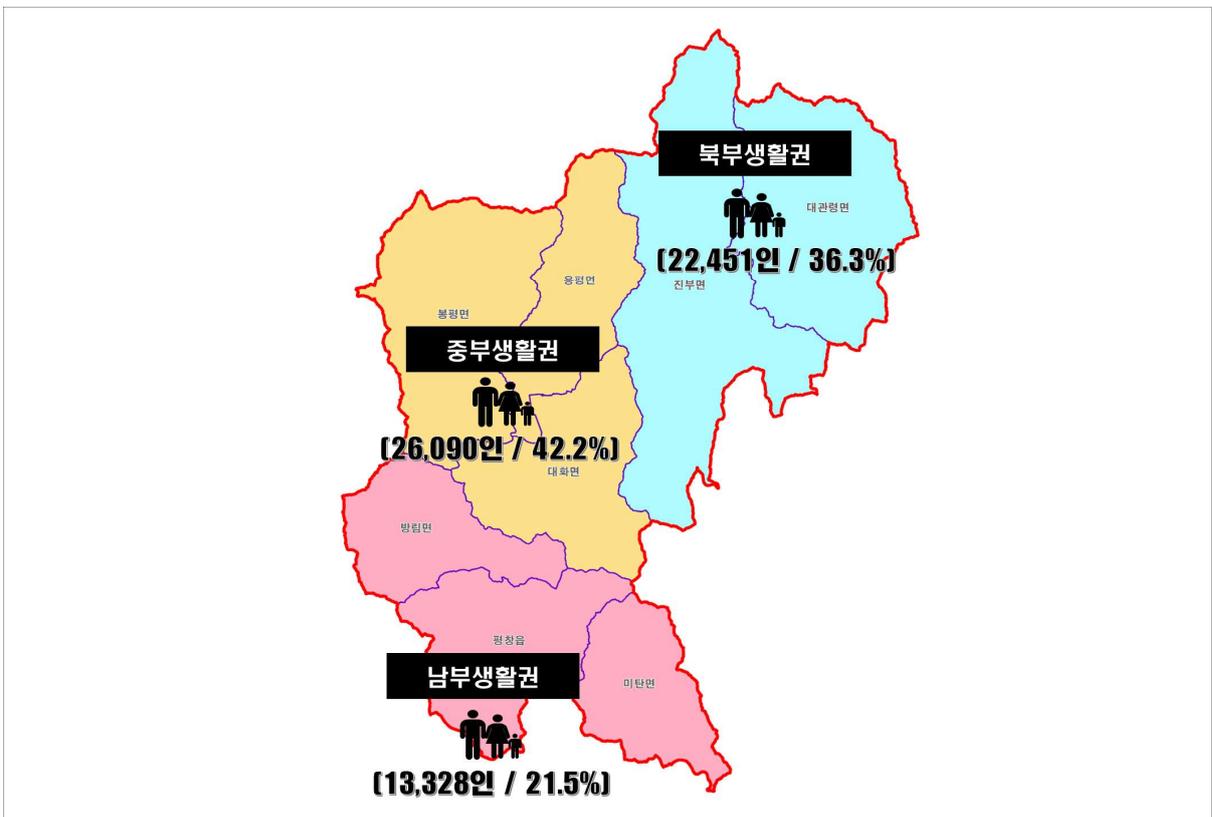


4)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

- 평창군 관내 각 읍·면별 지역특성 및 공간구조를 감안하여 당초
군기본계획의 생활권 틀 유지 및 명칭변경
- 평창군의 행정구역 전체를 1개 대권역으로 설정하고 남부, 중부,
북부의 3개 생활권으로 설정
 - 남부생활권 : 평창읍, 미탄면, 방림면
 - 중부생활권 : 대화면, 봉평면, 용평면
 - 북부생활권 : 진부면, 대관령면

【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】

구분	면적(km ²)	현재인구 (‘17.12)	1단계 (‘19~‘20)	2단계 (‘21~‘25)	3단계 (‘26~‘30)	4단계 (‘31~‘35)	인구밀도 (인/ha)	
목표인구	1,463.40	43,592	42,051 ≒ 42,000	42,373 ≒ 42,000	51,616 ≒ 52,000	61,869 ≒ 62,000	0.42	
생활권	남부권	391.88	13,284	12,846	12,719	13,037	13,328	0.34
	중부권	518.83	14,789	14,251	13,982	19,751	26,090	0.50
	북부권	552.69	15,519	14,954	15,672	18,828	22,451	0.41



5) 토지이용계획

- 지정 근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의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여 미조성, 미추진된 사업을 조정반영하고,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계획 수립
 - 시가화용지 변경 : 10건
 -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반영 9건
 - 신규사업(노람뜰 일원 공유지 집단화사업) 반영 1건
 - 도시지역 확장 : 1건
 - 신규사업(송정지구 주택건설사업) 추진을 위한 진부도시지역 확장
 - 시가화예정용지 : 13건
 -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시가화용지 전환 사항 반영 : 8건
 - 미추진된 사업 조정반영 : 5건

【토지이용계획(안) 총괄】

구 분	기 정		증 감	변 경		비 고
	면 적(k㎡)	비 율(%)		면 적(k㎡)	비 율(%)	
합 계	1,463.680	100.0	증) 0.148	1,463.828	100.0	
시가화 용지	소 계	35.237	2.4	증) 2.284	37.521	2.6
	주거용지	5.074	0.3	증) 1.132	6.206	0.4
	상업용지	0.896	0.1	-	0.896	0.1
	공업용지	-	-	-	-	-
	관리용지	29.267	2.0	증) 1.152	30.419	2.1
시가화 예정용지	소 계	15.855	1.1	감) 1.177	14.678	1.0
	주거용지	1.197	0.1	감) 0.945	0.252	-
	상업용지	0.337	-	증) 0.006	0.343	-
	공업용지	2.681	0.2	-	2.681	0.2
	복합용지	1.229	0.1	감) 1.229	-	-
	지구단위계획	10.441	0.7	증) 0.991	11.402	0.8
보전용지	1,412.588	96.5	감) 0.959	1,411.629	96.4	

6) 부문별계획

구분	주요내용
<p>기반시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위 및 관련계획의 도로망체계를 수용,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로망체계 구축 - 동서간·남북간 간선기능 강화로 평창군의 성장동력으로서의 도로기능 강화 - 지역간 도로 및 주간선가로망의 선형개량을 통한 도로망 기능 개선 - 간선가로망 기능강화에 의한 관광·휴양자원간 연계 도로망체계 구축 - 동서간 간선도로 기능 강화에 의한 동서측 생활권간 소통 강화 ■ 세부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- 선형변경 2건 : 국도31, 41호선 - 노선신설 1건 : 지방도408호선 - 도로확장 3건 : 군도 4, 8, 17호선 - 순환경철도 일부선형변경
<p>도심 및 주거환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시재생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특성 활용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- 도시재생 유형별 도시재생 추진 - 농어촌 자원의 창의적 활용으로 새로운 지역 활력 창출 -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- 커뮤니티 기반형성을 통한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 ■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- 읍면간불균형 방지대책 마련 -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모색 - 주택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-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- 빈집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
<p>환경의 보전과 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제로도시 조성과 녹색도시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-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전략 수립을 통해 하천, 공원, 수림대 등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 ■ 세부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교통 수단에 의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- 도시 주요시설의 저탄소 친환경정비 - 종합적인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- 도심내 Green-Network 구축을 통한 도시녹화 효율성 제고 등

구 분	주요내용
경관 및 미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권에 특성에 따라 경관권역 설정을 통해 평창군의 도시 이미지 강화 및 정체성 확보 ■ 세부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부경관권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/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농산촌 체험문화 형성 • 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인공시설물 정비 / 시가지내 상업지 경관 정비 • 관광·휴양기능 강화 - 중부경관권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연경관 보전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/ 산촌문화와 연계한 취락지 경관 개선 • 역사문화 경관자원 관리 및 네트워크화 / 자연친화적인 관광·휴양지 조성 - 남부경관권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·교육·문화 중심지로서의 도시 역사성 확보 •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네트워크화 • 구시가지 경관개선 및 신시가지와의 조화 유도 • 주요 역사·문화자원 체계적인 경관 관리
공원 및 녹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역적 공원녹지체계 구축 - 보유하고 있는 잠재요소를 발굴하여 녹색도시 이미지 구현 - 공원·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 및 지역적 균등배분 ■ 세부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악축, 수변축과 보전축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창군을 관류하는 평창강, 오대천을 중심으로 수변경관보전축 설정 • 산악경관보전축, 청청경관보전축, 수변경관보전축 설정 - 녹지와 주변지역의 문화재 및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녹지율 향상과 편리성 도모 -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따른 근린공원 2개소 폐지(창동근린공원, 횡계공원)
방재 및 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유형의 다양화와 대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- 재난안전 예방·대비 체계를 통한 피해 최소화 -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구조적 개선 -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 구축 및 방재도시계획 수립 ■ 세부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위험요소 증가에 따른 재해유형별 관리대책 마련 - 범죄,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성 강화 및 도시방재계획 수립

구 분	주요내용
경제·산업 사회·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창군 고유의 도시활력 부여 및 경쟁력 강화 - 수요자 중심의 사회, 문화, 복지, 교육 인프라 확충 ■ 세부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차산업을 바탕으로 제조, 유통, 체험, 관광 등을 연계한 신 부가가치 창출 - 노후한 평창, 방림농공단지 재생을 통한 고도화산업지원 - 전통시장, 동계레포츠시설 등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- 생활권별, 수요자별 중심의 각종 사회, 문화, 복지, 교육 인프라 기반 확충

관련법규 발췌
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9조(도시·군기본계획의 내용)

- ① 도시·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·목표에 관한 사항
 2. 공간구조,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
 3.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4.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
 5.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6.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 7. 공원·녹지에 관한 사항
 8. 경관에 관한 사항
 - 8의2.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
 - 8의3. 방재·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
 9. 제2호부터 제8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21조(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2.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지침

제2장 제2절 목표년도

2-2-1.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,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.
(예 : 2020년, 2025년)

2-2-2. 시장·군수는 5년마다 도시·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,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장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

3-2-1. 계획의 종합성 제고

- (1) 토지이용·교통·환경 등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·사회, 행정·재정 등 비물적 분야를 포함한다.
- (2) 부문별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,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한다.

3-2-2. 관련계획간의 연계와 조화

- (1) 국토종합계획·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, 도시·군관리계획·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. 다만,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.
- (2) 도시·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.
- (3)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3-2-3.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

- (1)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·경관·생태계·녹지공간 등의 정비·개량·보호 및 확충과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한다.
- (2) 국민소득의 향상, 산업의 발달,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므로 한계자원인 토지·물·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(3)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가 단절되지 않고 벨트형태를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 개발과 관리가 되도록 한다.
- (4) 녹지축·생태계·우량농지, 임상이 양호한 임야,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.
- (5)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·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(6) 단지등의 개발로 초기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(7) 하천축의 발전잠재력을 진단하여 하천축을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을 제시한다.
- (8) 보전·복원·친수 지구 등 하천환경 특성과 연계한 하천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한다.
- (9)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, 재해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(10) 도시의 쾌적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바람길 분석 및 조성 등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
- (11) 연안의 이용상황·침식상태 등을 감안하여 연안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방향을 제시한다.
- (12)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(이하 “토지적성평가“라 한다)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한다.

3-2-4. 계획의 차등화·단계화

- (1) 도시의 규모, 지형, 지리적 여건,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인구밀도,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내용에 반영하고, 기반시설의 배치계획, 토지용도 등은 인근 지역과 연계·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.
- (2) 각 부문별계획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시·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
3-2-5. 계획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

각 항목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·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·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.

제3장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

3-3-1. 도시·군기본계획의 작성시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(1)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(변경 수립시에는 해당부분만 계획수립할 수 있음)
- (2) 상위계획의 수용
- (3)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
- (4)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
 - ① 자료출처 명시
 - ②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
- (5)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
- (6) 시설입지의 적정성 확보
- (7) 계획의 일관성 확보